


이렇게 신청하세요!



준비해야 할 서류는?

「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」, 「소득·재산 신고서」, 「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」와 신분증, 본인명의로 통장사본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☞ 필요시 추가로 제출하셔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뒷면의 ‘신청 구비서류(기본)’를 참고하시고  사전에 유선상담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「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」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!

동봉해 드린 「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」의 ‘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’란에는 반드시 수급희망자 및 그 배우자가 직접 자필 한글정자 서명하거나 인감날인(인감증명서 첨부)을 하여야 합니다.

☞ 대리신청 또는 부부 중 1인만 방문하는 경우에도 수급희망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서명·날인이 필요합니다. (서명날인 누락시 신청서 접수 불가)

누가 지급받을 수 있나요?

기초연금을 신청하신 경우 소득·재산 조사와 직역연금 수급권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.

소득·재산 요건	직역연금 요건
<p>소득인정액* 이 선정기준액** 이하</p> <p>*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</p> <p>** '16년 기준 : 단독가구(홀몸노인) 월 100만원, 부부가구 월160만원</p>	<p>수급희망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* 수급권자가 아닐 것</p> <p>* 직역연금 :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</p>

「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」를 함께 신청하세요! (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)

‘수급희망자 이력관리’를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.

☞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가 모두 신청하셔야 합니다. (신청서에 본인 및 배우자의 서명·날인 필요)

신청 구비서류 (기본)

※ 추가 구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신청 전에 안내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유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!



필수 제출서류
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
 - ※ 부부가구인 경우 '동의자 성명' 란에 각각 기재 후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인감 날인
-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
- 수급희망자 각각의 신분증
-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급희망자 각각의 통장사본
-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(희망시)

추가 제출서류

대리신청 (해당시)	배우자	<input type="checkbox"/> 대리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
	8촌 이내 직계혈족 및 4촌 이내 인척	<input type="checkbox"/> 대리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적등본
		<input type="checkbox"/> 대리 신청 위임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진단서 또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등록 관련서류
가구유형 (택 1)	단독가구	-
	단독가구(사실상 이혼관계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실(이)혼 관계 확인서
	부부가구(법률혼 관계)	-
	부부가구(사실상 혼인관계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실(이)혼 관계 확인서
	부부가구(가출·행방·실종에 의한 배우자 부재 경우)	<input type="checkbox"/> 경찰서의 가출·행방불명 신고접수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문
거주구분 (택 1)	자가	-
	전월세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서
	무료임대	<input type="checkbox"/> 무료임대 확인서
	기타	<input type="checkbox"/> 거주비용 영수증 또는 입소보증금 관련 서류
재산 (해당시)	거주지 외 임차보증금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서
재산산정 제외차량 (해당시)	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	-
	장애인이 소유한 차량	-
	분실·도난차량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말소등록증
	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 (대표자의 명의로 등록)의 차량	<input type="checkbox"/>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원부 (법인·단체의 지출증빙서류 등)
	명의로용·대여, 대포차량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확인된 수사종결서류·판결문
부채인정 (해당시)	공공기관 등의 대출금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* 증빙서류 *수령한 주택연금 총 금액 및 농지연금 총 금액도 포함
	개인 간 부채(사채)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원의 판결문 또는 결정문, 화해·조정조서
	임대보증금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서

※ 붉은색 표시된 법정서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공단(지사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